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05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35호)

2026. 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9205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9235호)	2
1. 제안경위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4
1.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 제7조의2 신설) ..	4
2.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송재봉의원안 제26조)	14
3. 매점매석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윤준병의원안 제31조의2 신설)	18
IV. 입법의 재정영향	22

I.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920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송재봉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6. 12.

다. 회 부 일 : 2026. 7.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점매석 행위는 물품의 수급 불안이나 가격 급등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는 수사, 기소, 재판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물가안정 대응에 한계가 있고, 경제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이에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및 제26조).

Ⅱ.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923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6. 15.

다. 회 부 일 : 2026. 7.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상황이나 수급 불안 시 발생하는 매점매석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반면, 위반행위로 얻는 불법 수익은 처벌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따라 벌금 수준은 매점매석 행위를 통하여 얻은 부당이득에 비례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점매석 행위 제재는 시정명령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역시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고, 매점매석에 대한 신고에 따른 포상금 제

도도 전무해 이를 실효적으로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안 제7조의2 및 제3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행	송재봉의원안	윤준병의원안
	<u><신설></u>	○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 주무부장관은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래금액, 물품의 보관 또는 반출제한 물량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함 - 과징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재정경제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 재정경제부장관은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이익의 산정 기준, 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두 개정안은 모두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

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관련된 물품은 몰수하되,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¹⁾

재난 상황이나 수급 불안 시 발생하는 매점매석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정부는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석유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 시행 현황]

(2026. 9. 22. 기준)

고시명	적용시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고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지
축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2026. 10. 31.까지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2026. 10. 31.까지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2026. 8. 27.부터 5개월이 되는 날까지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의2(몰수와 추징) 제26조의 범죄에 관련된 물품은 몰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그런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현행 제재수단은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 기소, 재판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또한,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경제적 제재수단이 미흡하여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부당이득 박탈을 위한 과징금 부과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송재봉의원안 및 윤준병의원안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효과적으로 박탈하고, 매점매석 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과징금은 전통적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의무이행확보수단²⁾으로,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이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근거 법률에 ①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주체,

2)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440

② 부과사유(위반행위 유형), ③ 상한액, ④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⑤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³⁾.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주무부장관(송재봉의원안)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윤준병의원안)이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 부과사유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과징금의 부과 주체를 송재봉의원안은 주무부장관으로, 윤준병의원안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주무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고발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고발 등 기존 절차와 과징금 부과를 연계하는 측면에서 주무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

3) 「행정기본법」 제28조(과징금의 기준)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사유
3. 상한액
4.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5.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정명령 등) 주무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고발) 제25조 및 제26조의 죄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도록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재정경제부는 현재 주무부 장관이 행정조사·시정명령·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과징금에 대해서도 주무부 장관이 부과·징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과징금의 상한액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모두 매점매석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환수와 함께 징벌적 측면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규모를 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징벌적 측면을 고려한 경제적 이익 환수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입법례를 보면, 개정안과 같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일정 배수를 과징금의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음.⁵⁾

다만, 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벌금과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기존 제재

5) 「약사법」 제81조의2(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해당 품목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5(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① 공단은 제43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진료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진료제한 조치가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게 한 보험급여의 금액 또는 거짓이나 부정·부당하게 지급받은 진료비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수단을 고려하여 제재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징금과 벌금을 병과하는 것이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면서도, 그 제재의 총합이 법 위반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잉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⁶⁾, 개정안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을 포함한 제재의 총량을 과잉금지원칙의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윤준병의원안은 과징금 부과 처분의 비례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익 규모 외에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과징금은 금전적 부담을 주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윤준병의원안과 같이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송재봉의원안은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해당 물품의 거래금액, 물품의 보관 또는 반출제한 물량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

6)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

정하고 있음.

매점매석 행위 금지조치의 주요 내용은 특정 물품을 일정 기간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 물량을 반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⁷⁾, 이를 위반하여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송재봉의원안은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익 등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입법례를 보면, 과징금 상한을 법률에서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준 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⁸⁾,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상

7)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92호) 제4조(석유정제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는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 유종별로 2026년도 월별 반출량이 2025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한다.

③ 석유정제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98호)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등을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사업자는 조사 착수일 전 30일간의 해당 물품 재고량을 전년도 같은 기간의 재고량 대비 80%를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

한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재정경제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임.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법정형 상향, 필요적 몰수·추징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1799호)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당이득 산정의 어려움, 법정형 상향 및 필요적 몰수·추징과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과징금 관련 내용은 대안에 반영되지 않았음.⁹⁾

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9) 제382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록(제2차 2020.11.11., 제6차 2020.11.23.) 참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송재봉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신설>	제7조의2(과징금) ① 주무부장은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래금액, 물품의 보관 또는 반출제한 물량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무부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제7조의2(과징금) ① 재정경제부장은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③ 재정경제부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의 산정 기준, 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현	행	송재봉의원안	윤준병의원안
		<u>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u>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⑤ <u>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u>

2.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송재봉의원안 제26조)

현행	송재봉의원안
○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징역의 상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벌금의 상한만 3억원으로 상향하려고 하고 있음.

매점매석 행위죄는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인 ‘폭리 목적’을 범죄성립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어서 ‘폭리 목적’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점,¹⁰⁾ 범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취득하게 되는 재산상 이득액이 상당히 고액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행위자에게는 더 큰 형벌이 될 수 있는 점¹¹⁾ 등을 고려할 때, 벌금의 상한을 상향할 가능성 및 필요성이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벌금의 상한까지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에

10) 대법원 2024. 1. 4. 2023도2836

11) 헌법재판소 2010헌가42, 2011. 11. 24. 전원재판부

대해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하여 대상자가 거듭 처벌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3억원 이상의 벌금 상한을 규정한 입법례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3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¹²⁾

한편, 동 벌칙 조항은 1995년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후 2021년에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및 매점매석 행위의 벌칙을 현행과 같이 상향 조정하였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상한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할 경우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10. (생략)

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재정경제부는 벌금을 상향하는 내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송재봉의원안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억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 ----- ----- <u>3억원</u> -----.

3. 매점매석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윤준병의원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윤준병의원안
<u><신설></u>	○ 매점매석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재정경제부장관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지급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윤준병의원안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매점매석 행위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것인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고량, 거래처별 공급량 등 사업자의 내부 거래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거래정보 등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폭리를 목적으로 하였는지, 고의로 판매를 기피하였는지 등은 내부자의 협조 없이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조사만으로는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또는 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 및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규정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입법례가 있음.

한편, 재정경제부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임.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규정 입법례 현황]

법률명	신고포상금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2. 제3조제1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원사업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4.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발주자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법률명	신고포상금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① 시·도지사(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3조의3에서 같다)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의 명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제1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고용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②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2조(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윤준병의원안
<신 설>	제31조의2(신고포상금)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V. 입법의 재정영향

송재봉의원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¹³⁾

윤준병의원안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현 시점에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건수와 개정안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대하여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보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¹⁴⁾

문 의 처

02)6788-5152

13)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14) 국회예산정책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026. 7. 6.